



새로운 생각 키우기  
올바른 마음 가꾸기  
튼튼한 체력 기르기

# 대성 가정 통신

2021 - 153 호  
전화 : 031-584-0621  
FAX : 031-584-9226

## 위드 코로나 예방수칙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현재 단계적 일상회복과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사적 모임과 음식점 카페 등을 제한없이 이용하게 됨으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, 최근 시내 학교감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학교에서는 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일 빈발 접촉면 소독, 발열 체크(2회), 교실 수시 환기, 개인위생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환절기와 맞물려 호흡기 감염병 환아의 증가로 코로나 유사증상과 겹치는 부분도 있사오니 발열 및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전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셔서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### <📌> 학생·교직원 5대 예방수칙>

1.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(KF80, KF94)하고 수시로 손 씻기
2. 개인 간 거리두기 지키기, 사적 모임 자제
3. 다중이용시설(코인노래방, 스터디 카페, PC방, 다중체육시설 등) 이용 자제
4.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
5. 신선한 공기로 수시로 환기하기

### <📌> 코로나-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>

<p>37.5도 이상의 발열 또는 인후통,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(코로나-19 유사증상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-&gt;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 (코로나 유사증상으로 출석인정 가능)</li> <li>▪ 보건소선별진료소(☎ 031-582-2488) 또는 화도읍 선별진료소(590-8515), 문의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 (검사) 필수</li> <li>※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</li> <li>▪ 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함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코로나-19 선제검사(PCR)결과도 가능</li> <li>-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</li> </ul> </li> </ul>
<p>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</p>	<p>기본원칙: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</p> <p>※다만,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,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</li> <li>2) 격리통지를 받은 '즉시'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</li> </ol>
<p>동거인이 수동감시자인 경우</p>	<p>코로나-19 예방접종(2차 완료)을 한 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수동감시자인 경우는 처음 코로나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(등교중지)하고, 그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도 됩니다. (수동감시자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다시 받고 동거인은 검사결과 나오는 동안 등교하면 안됩니다.)</p>

< 🚨 코로나-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>

- 코로나 19 관련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'출석'으로 인정됩니다.

코로나 19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 증빙 자료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 증빙 자료
확진자	보건당국의 입원 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	• 입원 치료 통지서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	• 격리통지서
동거인 중에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	보건당국의 격리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함께 등교중지	• 동거인의 격리통지서
본인 또는 동거인의 코로나-19 진단검사 실시 할 경우	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 실시할 경우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(결과 음성일 때 등교 가능)	•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	발열(37.5°C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 (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)	•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 • 등교중지 학생보호자 확인서, 가정 내 건강 기록지
기저질환(천식, 호흡기질환 등)이 있는 고위험군	의사 진단서(소견서)에 따름	• 의사소견서

-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확인서, 선별 진료서 방문확인서, 가정 내 건강기록지 등은 (학교홈페이지 다운로드)
- (※ 보건당국의 코로나 - 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)

2021년 11월 03일

대 성 초 등 학 교 장(직인생략)